



정책동향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원급 진료시 본인부담 경감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139개 직장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0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하여 가입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안 제7조)
 -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안 제9조, 별표 2)
 - 기존 70세 이상 노인들만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나, 금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킴.
 - 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9,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존 2,300원에서 1,200원으로 약 52%정도 의료비 부담이 경감됨.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급여비용가감기준 규정(안 제11조)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 결

정 보험자부담금의 5/100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청구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비용 지급기간 단축근거 마련(안 제13조)
 - 요양급여 비용 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EDI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안 제25조, 제26조)
 - 신설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년은 65세로 규정함.
 - 상근심사위원은 의사의 경우 5년 이상, 치과의사 등의 경우 10년 이상 의 료기관에서 종사한 자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규정(안 제33조)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보험료 경감대상을 농업·수렵업·어업 및 광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등으로 정함.
- 가산금 면제근거규정 마련(안제44조)
 - 천재·지변이나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교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함.
-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혜택 제고(안 제48조, 별표 7)
 -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증진하기 위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신청에 의하여 의 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전 신생아에게 확대 실시

정신지체 장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종전에는 출생아

의 58%에 대해서 실시하여 오던 것을 2001년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에게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전 출생아의 58%(약 38만명)에서 100%(65만명)로 확대하기 위해 2001년에 6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 선천성대사이상증은 체내의 특정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 우유나 모유를 섭취할 경우 뇌세포가 파괴되는 질병으로 출생 1주일내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검사시기가 매우 중요함.
- 또한 검사후 이상자에 대한 조기 치료 등 사후관리 대상도 저소득 자녀에서 단계적으로 전 이상자까지 확대하여 차세대 국민의 질 향상과 정신지체 발생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취약계층 급식지원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취약계층 지원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시·도로부터 조사된 결식 우려가 있는 2만 2400여 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1만 6천여 명의 중증(重症)노인에 대하여 집으로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을 위한 예산을 각 시·도에 긴급 배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결식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전국의 22,405명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4월부터 6월말까지의 급식비 47억원(지방비 50% 포함)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음.
- 일선 시·군·구의 아동복지지도원과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이 가정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급식제공 단체에 연계시켜 취학아동(21,435명)에게는 석식을, 미취학아동(970명)에게는 중식과 석식을 각각 제공하기로 하였음.
- 급식제공방법은 아동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하여 단순한 식사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내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종교단체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급식단체가 없는 지역은 인근 식당과

의 계약 등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전국 시·도에 지시하였으며, 아동급식제 공 실태와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현지점검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 또한 보건복지부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때문에 혼자서는 식사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무료 식사를 배달해 주기로 했음.
-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노인들이 가까운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전국 715개소 경로식당에 재정지원을 하여 작년 6개월 동안 60세 이상 노인 124만명이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노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그러나 건강한 노인들은 무료식당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만성질환(慢性疾患)을 앓고 있는 중증(重症) 노인들은 오히려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일선 시·군·구를 통하여 조사한 65세 이상 저소득 만성중증(慢性重症) 노인 1만 6천명에 대하여 무료급식 배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37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배정하고 4월부터 시행에 착수하도록 하였음.
- 또한 이들 노인들에게는 무료식사 배달과 함께 안부확인, 말벗되어 주기 등 재가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나가기로 하였음.

국민연금기금 1999년말 49조 6260억원

- 전년대비 10조 1814억원 증가 -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수) 오전 10시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2000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열어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된 결산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며, 1999년도 기금운용성과 평가(현재 진행중)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과 함께 일간신문에 공시될 예정이다.

-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총 49조 6260억원으로 1998년말 39조 4446억원보다 25.8%가 증가한 10조 1814억원이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음. 연금보험료 수입 8조 7971억원, 운용수익 4조 9275억원 등 총 13조 7246억원의 수입 중 연금급여 3조 8720억원 및 사업 비용 3182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주식대차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대상 확대(안)』를 의결함으로써, 금년 중에 약 200억원의 추가수익이 기대됨.
 - 주식대차거래는 연 6~9%의 수수료를 받고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차입기관은 차입하는 주식가액의 100%를 현금·채권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이 거의 없는 투자방법임.
 - 연금기금이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활용하여 무위험의 추가수익을 확보하는 이러한 투자방법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오던 투자방법임.
 - 그러나 우리 나라 대차거래시장은 IMF 이후에 활성화되어 지난해 약 4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음.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주식대차거래로 무위험의 추가 수익이 기대되고 대차거래시장은 국민연금기금의 참여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이밖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실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안)』이 의결되었음.
 - 실무평가위원회는 현재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교수·연구원·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기금운용의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실무평가위원회는 이날 제정된 운영세칙에 의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을 사전에 심의하며, 소위원회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의료보험통합 추진현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0년 7월 출범되는 의료보험 완전통합에 지장이 없도록 신설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확정하고, 앞으로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사무실 임차, 전산장비의 이전 등 필요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총력 추진하고 있다.

□ 의료보험 통합 추진현황

- 의료보험 통합은 1980년 이후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1997년 12월 국민 의료보험법 제정 및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확정됨.
 - 1998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
-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1998년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 보험공단을 통합함.
-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구축한 사업장별 소득신고자료를 인수받아(4월 3일) 보험료 가산정 D/B를 구축중이며, 동 자료는 5월중 사업장의 확인·신고를 거쳐 6월 중 모든 가입자에게 미리 7월 보험료에 대한 예고통지를 할 계획임.
- 1999년 5월 전문기관의 용역보고를 토대로 1, 2단계로 나누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임.
 - 1단계시스템(3원화시스템)은 프로그램 수정·보완을 완료(1,743본)하고, 기관운영프로그램 등 1,451본을 개발하여 7월부터 운영(진척률 70%,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부분만 남음)함.
 - 2단계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은 2000년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00년 11~12월중 안정화기간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4월 현재 업무분석을 완료하고 프로그램 개발중(진척률 55%)임.
- 하위규정 제정: 건강보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은 법제처 심의중으로 4월 말까지 제정이 완료되며, 시행규칙(입법예고: 4월 19일~5월 9일), 고시 등 각종 규정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제정할 계획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진료비 청구·심사정보시스템 중·단기보장 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조직체계

- 현재의 2단계 체제(본부 ↔ 지사)를 3단계 체제(본부 ↔ 지역본부 ↔ 지사)로 전환함.
 - 본부가 전 지사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관리체제 마련
- 본부의 일반 현업업무를 하부조직에 이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의 업무 기능을 강화

【본부조직】

- 상임이사(3인)를 기획담당, 제1업무담당, 제2업무담당 상임이사로 하고, 제1업무 상임이사는 지역가입자 관리를, 제2업무 상임이사는 직장가입자 관리를 전담토록 하여 업무 전문화 및 책임성 강화
- 사회보장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조사연구 및 정책지원기능 제고
- 내부조직을 12실 1센터 44부(현행조직 기준 1센터 증가, 2부 감소)로 하고, 본부의 업무감량에 따라 본부인력 감축
 - 정원: 611 → 538명(△73명, △11.9%, 현원 697명 기준 22.8% 감축)

【지역본부조직(6개)】

- 6개 지역전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본부 설치
 - 인사, 예산 등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관할지사 관리 및 지원
- 내부조직으로 행정지원부, 지역관리부, 직장관리부 및 정보운영부를 두고, 지역본부당 80여 명으로 운영

【지사조직(235개)】

- 기본적으로 시·군·구 행정구역에 1개 지사를 설치하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지사당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총 45만명을 넘지 않도록 함.
- 직장조합(139개: 공동 82, 단독 57)은 조합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공단지사

와 통합하되, 직장조합(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는 직장조합끼리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대도시의 69개 지사는 지역과 직장업무, 154개 지사는 지역, 12개 지사는 직장 출장소)함.

- 지역·공교·직장대상을 모두 관할하는 지사(69개)는 내부조직을 행정지원부, 지역관리부 및 직장관리부로 하여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민원 편의를 도모함.
- 국민의료보험공단의 민원실(27개)은 소속 지사보다 규모가 큼을 감안, 울릉 민원실을 제외한 민원실은 지사로 전환함.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2일자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4월 11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의료법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에서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특례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동 면허증 교부신청절차 및 수수료징수 근거 규정을 삭제함.
- 의료인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의료인단체장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동 신고절차 및 신고서식을 폐지함.
- 외국의 의료인이나 의료원조기관이 의료행위시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함.
- 의료기관의 관리의사제도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의 신고·변경 신고, 허가·변경허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시 관련내용을 개선함.
- 의료기관 외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가정간호가 포함됨에 따라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종류와 업무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근거를 삭제함.
- 의료관계 연구소 허가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절차 규정을 삭제함.

- 의료법인 정관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임원취임 승인 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승인신청 등에 관련된 구비 서류와 절차 규정을 삭제함.
-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각각 '보건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및 가정전문간호사'로 함.
-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입원실기준에 동 사항을 규정함.